
2022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모집요강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서 원 대 학 교

목 차

I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I . 전형일정	2
III . 지원자격	3
IV . 제출서류	7
V . 전형방법	8
VI . 전 형 료	9
VII . 장학금	10
VIII . 원서접수	10
IX . 등록금 환불안내	11
X . 유의사항	12

◆ [별첨]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과외국인 (입학정원 2%이내)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0	-	2명	-
	영어교육과		32		2명	
	교육학과		22		1명	
	유아교육과		32		2명	
	윤리교육과		20		1명	
	사회교육과		25		1명	
	역사교육과		25		1명	
	수학교육과		25		1명	
	생물교육과		25		1명	
	체육교육과		36		2명	
	음악교육과		20		1명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부		90	총 32명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인원 제한없음
	국제학부	중국어문화전공 한국어교육전공★	30			
공공서비스 대학	경찰학부	경찰행정전공 범죄수사전공	90			
	소방행정학과		50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	70			
	아동복지학과		40			
	상담심리학과		40			
바이오 융합대학	헬스케어운동학과		50			
	식품영양학과		40			
	환경공학과		40			
	바이오코스메틱학과		55			
미디어 융합대학	제약식품공학부	제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70			
	미디어콘텐츠학부	멀티미디어전공 영상미디어전공	65			
	웹툰콘텐츠학과		40			
	디자인학과		40			
	건축학과		50			
	광고홍보학과		40			
	패션의류학과		40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응용전공	70			
휴먼서비스 대학	호텔외식조리학부	호텔조리전공 호텔디저트식음료전공	100			
	항공서비스학과		60			
	뷰티학과		60			
	레저스포츠학부		70			

※재외국민외국인(입학정원 2%이내)은 전형은 일반학과에서 총32명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함

※북한이탈주민과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은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

※입학 후 학사조직 개편으로 모집단위의 신설, 통·폐합(모집중단), 명칭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

II.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기간	2021. 7. 05(월) ~ 7. 09(금) 17:00	※우편접수 시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인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원대학교 입학관리팀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서류제출	2021. 7. 16(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 출 처 : 서원대학교 입학관리팀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서류 부적격자 통보	2021. 8. 10(화) 이전	◆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면접고사	2021. 8. 17(화)	◆ 고사장소 및 시간은 개별 통보
최초합격자 발표	2021. 11. 11(목) 예정	◆ 발표 : 본교 입학홈페이지
등록확인 문서등록	2021. 12. 17(금) ~ 12. 20(월)	◆ 본교 홈페이지 [등록확인 문서등록]
최종등록	2022. 2. 9(수)~2. 11(금) 16:00까지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입학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접수 가능(마감일 이후 도착한 원서는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전형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록확인 문서등록 안내** : 본교 수시모집 합격자(최초/충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확인 문서등록을 완료한 후 본 등록금은 최종 등록기간(2022.2.9 ~ 2.11)에 납부하는 것으로 등록금 납부 및 등록 절차는 2021년 12월 경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 **합격자 등록금 납부고지서** :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이전 본교 홈페이지(www.seowon.ac.kr)에서 확인(출력) 후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충원합격자 발표** : 최초합격자와 충원합격자의 등록포기 결원에 대해 예비후보 성적순에 따라 발표함
※ 충원합격자 발표방법(차수발표 또는 실시간 충원) 및 등록방법은 2021년 12월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 **모든 합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격이 유효함**

Ⅲ. 지원자격

1.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1-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	3년	3년	3년	3년
해외근무자 (공무원,상사 직원,외국정 부·국제기구) 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1,095일)(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 해외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 분	내 용
해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학생: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지원자격 심사 공통 안내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에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1-2.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외국국적 취득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3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호자 등의 조건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인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3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2.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2-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구 분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TOPIK 3급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상당)에 합격한 자

○ 전교육과정 이수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 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2. 북한이탈주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IV.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재외국민및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⑥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⑧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⑩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⑪ 해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⑫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⑬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⑭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⑮ 여권사본(부모, 학생)	각 1부
전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⑦ 신분증 사본 ⑧ 재정정보증서류(외국인 제출서류) ⑨ 한국어능력증명서(TOPIK 3급 이상)	각 1부
북한이탈 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각 1부

○서류제출 유의사항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류 발행기관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공인기관의 공증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영사)관의 공증을 권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등은 해당 학교장의 확인(직인 날인)만으로도 제출 가능함.
- 외국인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재정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부담	■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원본)는 USD 18,000 이상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 가족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인 경우 본인과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재정보증인의 학비부담	■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본교 소정양식)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원본)는 USD 18,000 이상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예치】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서류 제출처 :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서원대학교 입학관리팀

V.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자격유형	전형요소 반영비율	면접방법
재외국민과외국인(2%이내)	구술면접 100% (60점 이상)	수학능력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구술면접으로 종합 평가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서류 100%	

- 전형은 서류심사 후 면접전형을 실시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면접전형 불응 시 불합격 처리됨
- 면접고사는 본교 지정고사실(홈페이지 공지)에 실시함.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전형은 면접고사 미시행(서류심사 100%)

2. 면접고사 안내

고사 대상	고사 안내	고사 일시	고사방법
재외국민과외국인(2%이내) 북한이탈주민	2021. 8. 10(화) 이전 본교 홈페이지 안내 예정	2021. 8. 17(화)	다수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개별 면접

- 성적산출 방법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면접점수로 환산
※ 소수점 처리방법 : 평가영역별 평균점수 산출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영
- 면접고사 응시자는 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
- 면접고사는 언어구사 능력, 자기소개, 수학계획 등을 평가하며 구술 면접에 의한 수학 가능 여부를 평가함
- 면접고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고사일시 및 장소 등)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

3. 선발원칙

- 지원자 중에서 득점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해외 수학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함
- 원서접수 후 지원자격에 대해 심사하여 자격미달자(서류미제출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합격자 중 미등록(등록포기), 등록금 환불 등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후보 성적순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부여받은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구술면접 득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본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 지원방법 및 이중등록금지 위반, 허위 기재, 부정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합격(입학) 취소자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음

VI. 전형료

구 분	전형료	비 고
재외국민과외국인(2%이내)	50,000원	원서 접수 시 납부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없음	전형료 50,000원 감면

- 납부한 전형료 중 일부는 반환될 수 있으며, 반환사유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지원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방법은 학교 직접방문과 지원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음.
- 지원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전산망 이용 수수료 등이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료 환불안내** : 접수가 완료된 이후 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전형료의 일부(고사료)를 환불함
 - **환불 기준** :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불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결과에 따라 해당 전형료(고사료)를 환불함
 - **환불 신청 기한** : 2021. 8. 20(금)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일괄처리(예정)

VII.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대 상	장학금 유형	지급금액	비 고
북한이탈주민	통일장학금	등록금 전액(4년)	입학금 포함 전액 면제

■외국인

장학금 종류		선발요건	장학금액	지급기간
신입생 장학금	A	TOPIK 5~6급	입학금과 수업료 90%	첫 학기
	B	TOPIK 4급	입학금과 수업료 70%	
	C	TOPIK 3급	입학금과 수업료 50%	
	[공통] 기숙사비 2년(4학기) 50% 지원(4인실 기준)			
학업 성적 장학금	A	직전 학기 4.0이상	수업료 80%	2~8학기
	B	직전 학기 3.5이상	수업료 60%	
	C	직전 학기 3.0이상	수업료 50%	
	D	직전 학기 2.5이상	수업료 30%	
TOPIK 장학금	A	TOPIK 6급	40만원	재학 중 2회 한함
	B	TOPIK 5급	30만원	
	C	TOPIK 4급	20만원	
교육교류협력학교/ 서원대 한국어교육원 졸업(수료)생	총장이 정한 금액			2~8학기
지급대상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2019년 9월 입학생부터)			

VIII. 원서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 접수기간 : 2021. 7. 05(월) ~ 7. 09(금) (09:00 ~ 17:00)
- ▶ 접수처 :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 서원대학교 입학관리팀
- ▶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의 내용을 숙지 후 별첨된 입학원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 입학원서 우편접수 시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접수 인정(마감일 이후 도착 시 원서접수 불가)

■ 접수 유의사항

- ▶ 본교 모집요강을 숙지한 후 접수 안내문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착오, 누락, 오기 등의 잘못된 내용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입학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접수 전 반드시 원서 기재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 입학원서 접수 후, 반드시 수험표를 수령하여 접수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수험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 ▶ 접수된 원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 원서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본교 입학관리팀 ☎ 043)299-88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X. 등록금 환불 안내

• 환불 신청 기간

- ① 문서등록 포기신청 : 2021년 12월 20일부터
- ② 등록금 : 2022년 2월 11일 이후부터

※ 환불 신청 기한 이후의 환불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 환불 신청 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 ① 본교 홈페이지(www.seowon.ac.kr) 접속 → 입시홈페이지 접속 → ‘서원대학교 지원자통합서비스’ 배너 선택
- ② 서원대학교 지원자통합서비스 로그인 : 수험번호, 성명, 비밀번호 입력
- ③ 등록금 환불 메뉴 : 계좌번호(본교 입학원서에 기재한 환불 계좌번호 입력)로 인증 후 환불 신청
- ④ 신청의사 재확인 후 등록금 환불신청 확인서 출력
- ⑤ 로그아웃

• 환불관련 유의사항

- 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하지 않음
- ② 환불은 입학원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송금함
 - ※ 평일 오후 3시 이후 접수건은 다음날 중에 처리되며,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접수 건은 그 다음주 월요일 중에 환불 처리됨
- ③ 환불접수 확인은 동일 메뉴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음
- ④ 신청 확인서는 출력하여 잘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로그아웃 해야 함
- ⑤ 등록확인 문서등록(2021년 12월)을 한 자가 등록금을 미납할(2022년 2월) 경우 미등록 불합격 처리함.

• 인터넷 환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본교 입학관리팀(☎ 043-299-8802)로 문의

X.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수시모집 지원자는 본교 및 타대학 수시모집을 포함하여 최대 6회(6개 전형)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사항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는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입학한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원서접수 시간은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전산에 입력된 시간이며, 창구접수의 경우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 기준임. 우편접수의 경우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 및 등록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 통보 방법(인터넷 발표, 전화 등)과 상관없이 수시모집에 합격 사실이 있는 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충원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3.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의 경우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 (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오니 이점 참고 바람

4. 수시모집, 정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이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 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5. 지원자 유의사항

- 이미 접수된 원서 및 제출서류는 취소나 반환 및 변경이 불가하며,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본교에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 본교는 입학업무를 위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함(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교 지원 불가)
 - 본교 원서접수를 통해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업무를 위해 활용됨. 또한,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는 학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함(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교 지원 불가)
 - 본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달성시까지 보유하며, 목적달성 이후 파기 예정임
 - 제출서류의 날조(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교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수능 최저학력 및 장학대상자 확인 등의 목적)의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교 지원 불가)
 -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본교에 지원한 것으로 지원자격 관련 학력검증을 위한 학력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또한, 외국인 학생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지원위반자 확인 등의 목적)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교 지원 불가)
 - 본 수시 모집요강의 내용 변경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고사(면접) 시작 시간 등은 지원 인원 및 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지정된 고사안내 일자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임
 - 합격(최초/총원)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므로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총원합격자 발표시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등)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5회 이상 수신불가)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또한 연락두절 상태인 자도 총원합격자에 포함(총원합격 후 미등록자로 처리)되므로 정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복수지원 금지' 위반사항에 해당됨
 - 전형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해당 메뉴(개인정보관리)에서 변경된 연락처로 수정하여야 하며, 미신고(미수정)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수시 모집의 경우 문서등록(2021년 12월)한 후, 최종 등록금을 등록기간(2022.2.9 ~ 2.11)에 납부해야 함(기한 내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별 지정된 등록기한내 미등록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불합격(등록포기)처리 함. 또한,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본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납부확인(조회)을 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전형기간 중 수험생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므로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본인의 신체질환이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이 가능한 학부(과)의 지망은 자신이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여야 함. 또한 본교에서는 공정한 학생선발을 추진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가 고사 등에 참여할 경우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원요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작성된 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본교 입학관리처로 제출(FAX 043-299-8809)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자격 미달 및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자의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학칙에 의거 입학 취소 후 3년 동안 본교에 지원 및 입학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문의바람

☎ (2867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377-3(모충동)

서원대학교 입학관리팀

☎ (043) 299-8802 FAX (043) 299-8809

[별첨 1] 재외 한국학교 현황

국 가	학 교 명	설립 연월일
일 본	동 경 한 국 학 교	1954.04.26
	교 토 국 제 학 교	1961.05.11
	오 사 카 금 강 학 교	1961.02.24
	건 국 한 국 학 교	1976.10.01
중 국	북 경 한 국 국 제 학 교	1998.08.26
	천 진 한 국 국 제 학 교	2001.03.05
	상 해 한 국 국 제 학 교	1999.07.06
	무 석 한 국 학 교	2006.09.01
	소 주 한 국 학 교	2013.11.28
	홍 콩 한 국 국 제 학 교	1988.03.01
	연 대 한 국 학 교	2001.03.05
	칭 다 오 청 운 한 국 학 교	2006.05.30
	대 련 한 국 국 제 학 교	2003.12.23
	선 양 한 국 국 제 학 교	2006.07.26
	연 변 한 국 학 교	1998.02.19
	광 저 우 한 국 학 교	2015.03.01
베 트 남	하 노 이 한 국 국 제 학 교	2006.03.21
	호 치 민 시 한 국 국 제 학 교	1998.09.01
인 도 네 시 아	자 카 르 타 한 국 국 제 학 교	1976.01.05
싱 가 포 르	싱 가 포 르 한 국 국 제 학 교	1993.02.17
태 국	방 콕 한 국 국 제 학 교	2002.02.18
필 리 핀	필 리 핀 한 국 국 제 학 교	2005.07.11
대 만	타 이 뻘 이 한 국 학 교	1961.10.01
	까 오 송 한 국 국 제 학 교	1961.01.25
사 우 디	젯 다 한 국 학 교	1976.09.18
	리 야 드 한 국 학 교	1979.04.24
파 라 과 이	파 라 과 이 한 국 학 교	1992.03.01
아 르 헨 티 나	아 르 헨 티 나 한 국 학 교	1995.01.23
브 라 질	브 라 질 한 국 학 교	1998.02.12
러 시 아	모 스 크 바 한 국 학 교	1992.02.14
이 란	테 헤 란 한 국 학 교	1976.04.30
이 집 트	카 이 로 한 국 학 교	1980.04.15

[별첨 2]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

1. 지원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등
- * 자세한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지원 대상

가.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 고등학교 졸업일(또는 예정일)이나 학력 인정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또는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나. 일반대·교육대를 제외한 전문대, 사이버대 등(연령 제한 없음)

- 고등학교 졸업일(또는 예정일)이나 학력 인정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또는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다.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은 반드시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
- 모든 대학 등은 △고등학교 졸업일(예정일), △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재북 학력을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했는지를 해당 서류로 반드시 확인**
 - * 고등학교 이하는 시도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 증명서**」를 전문대학 이상은 교육부장관 명의 「**학력인정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
- 교육지원금 수혜 횟수, 기간 등은 대상자에게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전국 시·군·구청 발급)를 제출받아 확인
 - * 긴급히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1)로 문의 및 확인

라. 기 타

- 북한이탈주민 본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결정되었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지원
- 연령 산정 기준 : 각 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

3. 지원 내용

가. 국·공립대는 해당 대학에서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전액 면제하고 사립대는 정부에서 등록금의 50%를 지원

-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국공립대는 면제, 사립대는 50% 지원

나.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지원(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계절학기 수강도 1학기로 처리)

4. 지원제외 대상

가.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나.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

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 * 제적·자퇴 이후 △재입학, △타 대학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②, ③ 항목 적용